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5 선고 2021가단50613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

변 론 종 결 2022. 3. 8.

판 결 선 고 2022. 4. 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10. 체결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11. 접수 제154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C은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자인데, 피고와 사이에 2019. 10. 10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신탁계약(이하 ‘이 사건 신탁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,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, 3호증, 을 제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D를 채무자, C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217,686,260원으로 하여 D의 C에 대한 보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받은 2019. 8. 2.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 법원 2019타채8363)을 기초로 2019. 11. 17. C에 대하여 지급명령(이 법원 2019차전17382)을 받았고, 2019. 12. 6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,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(이 법원 2021가합520194)에서 ‘C은 D에 대하여 보관금반환채무를 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’는 내용의 판결이 2021. 12. 8. 선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, 달리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장원지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동[도로명 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

벽돌조 슬래브 지붕위기와 2층 다세대주택

1층 109.80㎡

2층 109.80㎡

지하층 109.80㎡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

대 748.9㎡

3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2층 호 벽돌조 54.90㎡

4. 대지권의 표시

소유권대지권 748.9분의 41.6

